

# 「원종 휴먼빌 클라츠」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된 것으로 향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동호 배정 제외 및 계약 불가)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최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착오 또는 미숙지하여 받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등

### 1) 공급 위치 및 규모

- ① 공급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 B1블럭(원종동 101-2 일원)
- ② 공급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5층, 4개 동 / 총 225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25세대
- ③ 입주 시기 : 2027년 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2) 주택형별 면적 및 배정 세대수

(단위 : 세대, m<sup>2</sup>)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총공급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46.0620	46	46.0620	25.8650	71.9270	46.9066	118.8336	54	5 (25)
47.0468	47	47.0468	25.6884	72.7352	47.9095	120.6447	40	4 (20)
59.8001A	59A	59.8001	26.9478	86.7479	60.8966	147.6445	51	5 (25)
59.7560B	59B	59.7560	26.4544	86.2104	60.8518	147.0622	68	7 (35)
59.6824C	59C	59.6824	26.6311	86.3135	60.7767	147.0902	42	4 (20)
합 계							255	25 (125)

## II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 세대수

※ ( ) = 예비대상자 세대수

### 1) 기관추천(일반) 공급세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10% 범위

(단위 : 세대)

구분	46	47	59A	59B	59C	합 계
국가유공자	1 (5)	1 (5)	1 (5)	1 (5)	1 (5)	5 (25)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5)	1 (5)	1 (5)	1 (5)	1 (5)	5 (2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5)	-	1 (5)	1 (5)	-	3 (15)
중소기업 근로자	1 (5)	1 (5)	1 (5)	1 (5)	1 (5)	5 (25)
장애인	경기도	1 (5)	1 (5)	1 (5)	1 (5)	5 (25)
	서울특별시	-	-	-	1 (5)	1 (5)
	인천광역시	-	-	-	1 (5)	1 (5)
합 계	5 (25)	4 (20)	5 (25)	7 (35)	4 (20)	25 (125)

※ 상기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배정한 것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등 승인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공급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는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 범위에서 선정)

### III 분양 일정 (예정)

구분	일정(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5.03.28.(금) 예정		일간신문 공고 및 분양 홈페이지 (http://원종휴먼빌클라츠.com)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	2025.04.04.(금) 예정		원종 휴먼빌 클라츠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5.04.07.(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방문 청약	2025.04.07.(월) 예정 (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능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5.04.15.(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정당계약	2025.04.28.(월) ~ 04.30.(수) 예정 (10:00~16:00)		원종 휴먼빌 클라츠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특별공급 청약은 청약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 필수)** 받으시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하며,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신청 서류 구비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건본주택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IV 신청 자격

####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b>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b></li> <li>• 특별공급은 <b>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b>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 제한 제외)</li> <li>•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b>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b></li> </ul>										
	구분	처리 방법									
	<table border="1"> <tr> <td>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table border="1"> <tr> <td>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td> </tr> <tr> <td></td>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able> </td> <td></td> </tr> </table>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table border="1"> <tr> <td>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td> </tr> <tr> <td></td>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able>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table border="1"> <tr> <td>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td> </tr> <tr> <td></td>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able>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b></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이 경과</b>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이 경과</b>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이 경과</b>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천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동·호 배정 제외 및 계약 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 시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은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V 기타 유의 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 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대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대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1인이 동일 주택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분은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하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5.03.28.(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견본주택, 분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 대표번호(☎1661-7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I 견본주택 위치 등

### 1) 현장,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상기 이미지 및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정식 개관일 이전에는 관람이 불가하오니 이 점 반드시 양지하시어 방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 PREMIUM 6

<p>01 <b>마곡까지 10분대, 2정거장</b></p> <p>서해선 원종역, 대정-영성신(계획)              풍오대로, 경인고속도로 인접</p>	<p>02 <b>서울 앞 新 주거타운의 중심</b></p> <p>총 26,000여 세대, 계획인구 50,000명              마에드급 주거타운의 개발 시너지              (연동지구, 대정지구, 영성군영대 계획지)</p>	<p>03 <b>안심 초세권 단지</b></p> <p>임주 역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 교육 환경</p>
<p>04 <b>1km 안에 다 갖춘 인프라</b></p> <p>원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              대정지구의 인프라까지</p>	<p>05 <b>쾌적한 그린 라이프</b></p> <p>단지와 맞닿은 근린공원 계획,              오정대공원 등</p>	<p>06 <b>분양가 상한제 적용</b></p> <p>합리적인 분양가로              부담은 적게, 가치는 높게</p>

※ 상기 개발 계획, 학교 배정 등의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3) 단지 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단지 위치도



-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위치도 상의 개발 계획, 학교 배정 등의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